

임원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286호

임원보수규정

확 정 일 : 2023년 3월 24일

시 행 일 : 2023년 4월 1일

임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22.10.17.) 사항을 반영하여 임원 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 감액 규정 신설

2. 주요골자

- 퇴직금 감액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임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2023. 3. 24.>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임원보수규정 <신 설>	임원보수규정 제19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금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22.10.17.) 반영

임원보수규정

제정 2009.10. 1 제 22호

개정 2009.11.26 제 45호

개정 2014.01.24 제109호

개정 2016.11.25 제152호

개정 2019.12.28 제210호

개정 2021. 3.26 제242호

개정 2021.11.03 제256호

개정 2021.12.17 제261호

개정 2022.07.22 제271호

개정 [2023.03.24 제2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관 및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의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퇴직급여로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으로써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성과연봉”이란 임원의 경영성과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퇴직급여”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게 근속연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기본연봉

제5조(기본연봉) ① 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01.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연봉에는 「직원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서 정한 부가급여 중 모든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산기간 및 지급) ①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공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기본연봉의 지급은 기본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① 회계연도 중 새로이 선임되는 월의 기본연봉은 선임된 날부터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②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월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신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각각의 신분에 따른 기본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③ 휴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1.25.>

제3장 성과연봉

제8조(성과연봉) ① 사장의 성과연봉은 경영계약서에 따르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경영성과 평가방법과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01.24., 2021.12.17.>

제8조의2(중기성과연봉제 운영) ① 사장에 대해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성과연봉은 2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25.,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중기성과연봉의 분할지급률 등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을 따른다.<신설 2016.11.25.>

③ 사장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중기성과연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지급된 중기성과연봉은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6.11.25.>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성과연봉은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일시불, 사장에 대해서는 3년간(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성과연봉은 2년간) 분할로 지급한다.<개정 2016.11.25., 2021.12.17.>

② 임원이 회계연도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성과급은 해당연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한다.

제10조(성과연봉의 계산방법) ① 회계연도 중에 임원으로 선임 또는 퇴임함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의 성과연봉은 선임일과 퇴임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② 성과연봉은 평가대상연도의 기본연봉에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과연봉을 산정할 때 재임 중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없거나 성과연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기본연봉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월할계산시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1조(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지속가능경영규정」 제7조에

따라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규정」 제6조 각 호의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된 이후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성과연봉에서 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액은 형벌의 양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12.28.>

1. 금고 이상 : 성과연봉의 전액

2. 금고 미만 : 성과연봉의 2분의 1 이내 (다만, 자격상실의 경우 성과연봉의 2분의 1, 자격정지의 경우 성과연봉의 3분의 1 이상, 벌금형의 경우 성과연봉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03.>

3. 삭제 <2021.11.03.>

4. 삭제 <2021.11.03.>

제12조(성과연봉 환수절차 등) ① 공사가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과 근거, 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환수금액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지속가능경영규정」 제7조에 따라 성과연봉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연봉에서 해당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임원이 「지속가능경영규정」 제6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급예정인 성과연봉의 지급을 형의 확정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무혐의 확정시에는 유보된 성과연봉에 유보된 기간 동안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의 경과 이자를 가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임원이 「지속가능경영규정」 제6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청렴계약 체결이후 상임이사가 수령한 성과연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심의·의결 등) ① 상임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의 결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공사의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지속가능경영규정」 제6조 각 호의 청렴의무 준수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의 위반혐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상임임원이 「지속가능경영규정」 제6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이사회 소집 및 심의를 요구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14.01.2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결방법, 부의절차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이사회는 제13조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임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임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청취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환수시효) 임원으로 퇴직 후 3년(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성과연봉에 대한 환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03.>

제5장 퇴직급여

제16조(평균임금) 퇴직급여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26.>

제17조(퇴직급여 계산 및 지급) ① 퇴직급여는 재임기간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3.26.>

② 제1항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2021. 3.26.>

제18조(퇴직급여의 수령권자) 퇴직급여를 받을 권한은 본인이 가지며,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재산상속권자가 갖는다.

제19조(적용제외)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3. 24.]

제20조 삭제<2009.11.26.>

제6장 보칙

제21조(비상임이사의 보수) ①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안건의 심의·의결 및 공사업무 발전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무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성과연봉과 제17조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1.24.,

2022.7.22.>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직무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7.22.>

제22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3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9.10.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6.>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1.24.>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7조제4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제8조의2 및 제9조 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8.>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0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7.22.>

이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4.>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14.01.24.>

기본연봉표

구분	금액
사장 상임이사(부사장, 상임감사위원 포함)	경영계약서에 따른다. 사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

주1 :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주2 : 부득이한 사유로 사장의 경영계약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임사장의 경영계약서에 따른다.